

한미FTA 피해대책과 문제점

I. 정부대책 개요

□ 국내보완대책은 크게 ①직접적 피해지원 ②산업별 경쟁력 강화 ③농어촌 소득기반확충으로 구분

- 직접적 피해지원 : 피해보전직불제, 폐업지원제도
- 산업별 경쟁력 강화 :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, 농수산업 구조·체질 개선, 신성장 동력 확충 지원
- 농어촌 소득기반확충 :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,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,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농어민 생활여건 개선

1) 직접적 피해지원

①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 개편(지원기간 : 7년)

- 대상품목을 사전지정(現 키위·시설포도) 방식에서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
- 지급요건을 가격기준에서 粗수입(생산량×판매가격) 기준으로 변경
 - 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지급
 - 기준조수입 = 최근 5개년 조수입 중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×80%
- 소득보전비율을 현행 80%에서 85%로 상향 조정

② 폐업지원제도 개편(지원기간 : 5년)

- 대상품목 : 사전지정방식(現 시설포도·키위·복숭아)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선
- 지급요건 :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(조수입기준 80% 이하)을 준용
 - 경쟁력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

③ 고용지원 대책

-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(월 30~60만원) 지원
- 교육컨설팅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확충(농업기술센터)

2) 경쟁력 강화방안

①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

- 지원방향 : 유통체계 개선·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생산비용절감 및 경영안정지원 추진

〈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〉

분야		주요 추진사업
축산	한육우	· 한우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('08년) ·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확대 실시('08년) : 현 300㎡이상 음식점→100㎡, 구이용→갈비탕·찜·샤브샤브 · 도축세 폐지('08년) : 연간 470억 원 ·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·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 조정(130만원→155만원)
	돼지	· 축사시설 현대화, 분뇨 공동처리, 우량종돈 network 구축('08년)
	닭, 오리	· 사육단계에서의 위생기준 강화를 위한 HACCP 도입 · 포장유통의무화제도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
	낙농	· 조사료 생산 확대('06년 9천ha→'17년 100천ha) · 유유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등
과수	감귤	· 3~5개 대표 브랜드 육성 · 다공질필름 재배면적 확대('06년 5%→'17년 38%)
	사과	· 키작은 사과원 면적확대('06년 전체 18%→'17년 62%)
	포도	· 비가림 재배면적 확대('06년 : 52%→'17년 : 90%)
기타	채소	· 원예 전문 생산단지 시설 현대화 지원('17년까지 75개소) 등
	인삼	·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(15개소) · 재배과정이력관리 면적 확대(10%→40%) 등
	식용콩, 감자	·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패키지형(시설·장비·교육·컨설팅 및 운영자금 등) 지원 강화
	목재	· 국산목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원료 비축자금 지원

② 농업 구조·체질 개선

■ 추진방향

- 고령농(50%) : 경영이양직불제 보완·확대
- 전업농(40%) :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단계적 도입,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경영안정성 강화
- 취미농(10%) : 농업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

■ 경영이양직불제 보완·확대

구분	현행	개선방안
대상농지	· 진흥지역 내 논	· 진흥지역 내 모든 농지(논+밭)
지급금액	· (매도)월 241천원/ha · (임대)2,977천원/ha(1회) *지급상한 2ha	· (매도)월 250천원/ha · (임대후 은퇴)월 250천원/ha *지급상한 2ha
대상연령	· 63세~69세	· 65세~70세
지급기간	· 70세까지(최장 8년)	· 75세까지
지원조건	· 쌀농업에서 은퇴 · 농지은행 또는 55세 이하 전업농(2ha)에게 매도 또는 임대(5년)	· 농업에서 은퇴 · 농지은행 또는 55세 이하 전업농(2ha)에게 매도 또는 임대 후 은퇴
시행기간	· '97~'13	· 협정발효 후 5년 *평가 후 필요시 연장

* 농지·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검토

■ **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**

-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가단위 소득안정장치
- 일정연령 미만(예:70세)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해 당해 연도 농업소득(조수입)이 기준소득보다 일정 수준 이상 하락 시 그 격차의 일부(예:80%)를 보전

■ **이외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, 농업 신성장 동력 확충 지원,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등이 있음**

II. 보완대책의 문제점

1) 방향설정의 문제점

■ **'혁명적인 대책'이 없으며, 개방으로 농업구조조정을 실현하고자 함**

-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달리 피해보전직불제가 평균조수입의 80% 이하가 될 경우에 발동하게 한 것은 가격하락을 통해 농업의 구조조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의도. 즉, 불안정한 소득안정장치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음
- 농산물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은 외부 노동력과 많은 투입재, 시설 설치에 의존하는 중농 이상 규모 농가에 미치게 될 것임
- 주로 자가 노동에 의존하며 상업적 경영에 의존하지 않는 소농가와 고령농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면서 생존하게 될 것이다.

■ **정부 대책은 농가의 소득안정도, 농업구조조정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임**

- 중농과 대농은 불안정한 소득안정장치와 경영비의 증가 추세로 농가경영이 계속 어렵게 될 것임
- 이들은 지속적인 규모 확대를 꾀하지만 영농기반을 이양해 줄 소농가나 고령농은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도 농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구조조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
- 서구 농업선진국의 구조조정은 100여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하였는데,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 이후 특별한 가격지지·소득지지 정책 없이 급격하게 추진
-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농가들이 이농을 하게 되었으나 많은 영세농과 고령농이 농업에 남을 수 밖에 없어 구조조정의 성과도 미진

2)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의 문제점

■ **기준조수입이 과거 5년 중 최고·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의 80%로 낮아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지 못함**

- 기준조수입이 평균조수입의 80%이기 때문에 피해보전 직불제가 발동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수입은 80% 미만에 불과(아래 산정방식 참조)

<품목별 직불금 산정방식>

□ 품목별 직불금 = 농가당 재배면적×(기준조수입-당년조수입)×0.85

□ 예) ① 농가당 재배면적=1ha ② 3개년 평균조수입=1,000만원 ③ 기준조수입=800만원(1,000만원×80%) ④ 당년조수입=700만원
계산) * 품목별 직불금 = 1ha×(800만원-700만원)×0.85=85만원 * 농가 조수입 = 700만원+85만원 = 785만원(▼215만원)

■ **당년조수입이 기준조수입 밑으로 떨어져야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**

○ 관세 철폐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경우 조수입하락이 일시에 20%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, 피해보전 제도는 유명무실

- '05년 말 농가경제에 큰 충격을 준 '쌀값 대란' 은 13.3%의 가격하락이 있었음

○ 조수입이 20%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농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보전은 없음

○ 조수입이 3년 평균이므로 점진적으로 조수입 하락시 기준조수입도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되며, 농가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 영향을 받지만 피해보전 직불제는 발동되지 않음

■ **기준 조수입과 당년 조수입의 차액 중 85%를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되지 못함**

○ 미국과 EU는 가격(소득)지지목표를 설정하고 그 차이를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전

■ **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대체 관계로 인한 간접 피해는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음**

○ 예를 들어 미국산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 방울토마토가 간접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보전 대상이 되지 못함

3) **경영이양직불제 보완·확대의 문제점**

■ **65세~70세의 은퇴를 유도할 유인이 되지 못함**

○ 정부는 그동안 '고령농 특별소득보조' 라면서 고령노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하였으나 별도 대책이 아니라 경영이양직불제를 단지 보완

○ 65세 농림어업취업자가 67만명(37%)인 현실에서 연 300만원, 월 25만원/ha로는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해 생산의 집중과 영농규모의 확대는 실현하기 어려움

- 논외의 경우 자가 농지 보유 시 소득이 ha당 715만원('04년), 545만원('05년)

- 밭외의 경우 논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신청률은 극히 저조할 것임

4) **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대책**

■ **고용지원 대책은 있으나마나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음**

○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민이라도 타 작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

○ 농림어업 취업자의 75.5%가 50세 이상이고, 92.7%가 40세를 넘어 전직 능력이 부족

○ 농촌 지역 내 취업기회가 부족할뿐더러 기업이 1년간 360~72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농민을 고용할 유인이 높지 않음

○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컨설팅 등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충할 능력이 부족하다.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되 서비스는 기대 이하일 것임